기본급 120,304원 인상!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보장!
공직취임 쟁취! 감염병 보호! 노조 및 지부 회의 참여 보장!

지부교섭 속보 03호

2020.05.29(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3차 지부교섭_질의응답]

노조파괴 막기 위한 노동3권 보장!

노조 인정, 노동자 존중 필요한 때

3차 지부교섭이 28일(목) 15시 한국JCC에서 열렸다. 김정태 지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삼성도 노조 인정한다고 하면서 교섭에 노무사 내세우고, 노조가 조합원 확대사업을 하는데 방해하는 개악안을 내놓는 사업장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에 대한 공격 보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화를 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며 노조할 권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의 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로 전면 금지

사용자 교섭위원들은 지부의 노조파괴 대응 노동3권 요구안에 대해 질문했다. 쟁의 기간 중 시설이용 및 식사제공, 사업장 출입 보장, 사무직 쟁의에 대한 일터괴롭힘 금지, 쟁의 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로 금지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노조파괴법'이라고 불리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지부는 이에 대응해서 노동3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내용을 지부교섭에서 요구했다. 특히 쟁의 중 신규채용 및 대체근로 금지는 중요한 요구다. 쟁의에 대해 신규채용과 대체근로가 허용되면 파업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쟁의에 대해서 콧방귀도 안뀔 것이고, 교섭이 원만히 타결될리 없다.

노조파괴법 폐기하라!

노동3권 요구안은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요구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노조파괴법'이 통과되면 노조는 무력화되고,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는 더 멀어진다. 올해 지부교섭에서 노동3권 요구안을 쟁취하고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통해 '노조파괴법'을 폐기시키는 것이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지키는 길이다.

3차 교섭 속기록

쟁의 중 대체근로 허용은 헌법 위배!

노 : 코로나로 고용이 불안해지면 노동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본의 아닌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사업주들은 경비 아낀다고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다보니 산재사고가 난다. 지난주 현대중공업에서 또 3차 도급업체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 전에 사고가 있어서 특별근로감독까지 했는데 감독 끝나자마자 사고가 났다는 건 시사하는 점이 있다.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는 산재예방에 더 신경써달라. 사용자들이 코로나 속에서 노동자를 향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노조 인정한다고 하면서 첫 교섭에 노무사를 대신 내세웠다. 이게 우리 현실이다. 노조가 조합원을 확대하는 걸 방해하고자 개악안을 내놓는 사업장도 있다.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패턴이 보호무역으로 바뀐다고 한다. 수출이 많이 막힐 수도 을 것 같다. 국내 생산, 소비를 진작시키는 게 코로나 이후 경영자나 노동자가 함께 인식해야할 부분인 것 같다. 이럴 때일수록 노동자에 대한 공격 보다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화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는게 옳은 길이라고 본다.

사 : 작년 미중 무역갈등에 올해 코비드19까지 경기가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해가 되지 않을까 한다. 노사가 잘 협의해서 좋은 마무리되면 좋겠다. 오늘은 노동3권 요구에 대해 질의하겠다. 쟁의기간 중 시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일상적인 각종 시설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식사제공은 노무활동을 할 때에만 제공하는데 쟁의기간 중 식사제공이 무슨 뜻인지?

노 : 사업장마다 상황과 조건이 달라서 딱 잘라서 말하긴 어렵지만, 흔히 교육장, 서클룸 등 평소 조합원들이 활동했던 범위를 말한다. 정부에서 쟁의 중 시설 이용을 금지하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까지 막으려는 것에 대한 방어 차원이다. 식사제공은 그래도 해야되는 것 아닌가? 노조가 바깥 일정으로 나가게 되면 사전에 공고하는데, 사내에서 부분파업할 때는 식사제공해야되는 거 아닌가? 노사분쟁이 향후 노무제공을 위한 사업장의 각종 개선작업을 목표로 하는건데 식사제공은 하는게 맞는 것 같다.

사 : 예전에 지부교섭 합의 중에 상급단체 출입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출입 장소 중에 공용시설도 있지만 연구소 등 제한되는 장소도 있다.

노 : 예전 요구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동법 개악에 회사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출입을 막는 내용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연구소 등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는 기존대로 한다고 보면 된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장 출입을 법적으로 제한하려고해서 막자는 취지다.

사 : 사무직의 조합지침 수행에 대해 업무상 성과나 효율성을 이유로 일터괴롭힘하지 말라는 건 어떤건가?

노 : 생산직은 쟁의로 생산이 중단되면 딱 드러나는데, 사무직은 그렇지 않다. 사무직 조합원이 조합 지침수행한 것을 업무평가하면서 불이익 주면 안된다.

사 : 쟁의 중 신규채용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하지 못한다는 것과 비조합원 대체근무도 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포괄적이고 과도한 것 같다.

노 : 임금 못받으면서 파업까지 하는 건 생산에 지장을 주고 사용자를 압박해서 조속히 타결하려는 것이다. 파업해도 회사가 잘 돌아가고 생산 잘되면 교섭이 타결되겠나? 정치권이나 사용자단체가 대체근로 허용을 요구하는 건 헌법 정신에 안맞다. ILO(국제노동기구)도 대체근로는 결사의 자유 침해라고 말한다.